

RESEARCH ARTICLE

Juridical Practice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f the Right to Oral Proceedings in the European Patent Convention: Focusing on Whether the Right to Oral Proceedings is Violated and Suggestions on How to Protect the Right

Jinyup Kim

Research Fellow, Korea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Agency, Republic of Korea

Corresponding Author: Jinyup Kim (kjy3751@hanmail.net)

ABSTRACT

The right to a fair trial, a fundamental right, has long been regarded essential to protect other human rights. It has been codified in treaties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international criminal law, making it almost universal right in international law. Attempting to analyze the application and interpretation of the right in practice, this article focuses on the rulings of the European Patent Office Board of Appeals mainly because they recognize the limitation of the right while its absolute nature was affirmed. By analyzing the relevant regulations and rulings (or, legislative practice and jurisprudence), this article explores its implications (for international law) by focusing on the main findings of the jurisprudence and whether the right was violated. Finally, this article suggests introducing the interim procedure found in the Agreement on the Unified Patent Court as a means to provide European patent proprietors with more opportunities to make their cases orally.

KEYWORDS

Right to a fair trial, European Patent Office Legal Board of Appeal, Right to oral proceeding, European Patent Convention, Interim procedure

Open Access

Received: May 31, 2025
Revised: June 03, 2025
Accepted: August 27, 2025
Published: September 30, 2025

Funding: The author received manuscript fees for this article from Korea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Conflict of interest: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 2025 Korea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원저

유럽특허협약상 구두심리를 받을 권리의 해석에 관한 판례동향에 대한 고찰: 구두심리를 받을 권리의 침해 여부에 대한 검토 및 제언을 중심으로*

김진엽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전문위원

교신저자: 김진엽 (kgy3751@hanmail.net)

차례

1. 서론: (국제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개관
2. 유럽특허체제상 구두심리를 받을 권리에 관련된 입법동향
3. 유럽특허체제상 구두심리를 받을 권리에 관련된 판례동향
 - 3.1. 구두심리를 받을 권리에 관련된 유럽특허청 항소위원회의 주요 판례 개관
 - 3.2. 구두심리를 받을 권리에 관한 주요 사건인 N.N. v EPO 사건의 분석
4. 유럽특허청 항소위원회의 구두심리를 받을 권리에 관련된 N.N. v EPO 사건의 주요 특징 분석 및 검토와 제언
 - 4.1. 주요 특징
 - 4.2. 검토 및 제언: 구두심리를 받을 권리의 침해 여부 및 interim procedure의 도입
5. 결론

국문초록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right to a fair trial)”는 근본적인 성격을 가지는 권리로써, 모든 다른 인권의 보호 및 침해의 방지를 위해 필수적인 권리로 오랜 기간 동안 간주되어 왔다. 특히,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국제인권법 및 국제형사법을 포함한 다양한 국제법에서 성문화 되었으며 현재는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근본적 성격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제적 적용 및 해석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유럽특허협약 조항들의 해석 및 적용을 담당하고 있는 유럽특허청 항소위원회의 관련 판례에 중점을 두어 논의를 진행하였는데 이는 해당 판례에서 해당 권리의 절대적인 성격을 인정하는 동시에 그 제한 또는 예외에 대해서도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련 판례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본 논문에서는 관련 판례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 알아본 뒤 마지막으로 해당 판결들의 검토와 함께 제언을 진행하였다.

주제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유럽특허청 항소위원회, 공정한 구두심리를 받을 권리, 유럽특허협약, 임시 절차

1. 서론: (국제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개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right to a fair trial)”는 기본적·근본적 성격을 가지는 권리로서, 많은 다른 인권들의 보호 및 침해 방지를 위한 필수적인 전제 권리로 오랜 기간 동안 간주되어 왔다.¹⁾ 즉, 고대 로마의 첫 성문법이었던 12표법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민주주의의 초석으로 여겨지는 영국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에서도 발견되었으며, 미국 수정헌법 제6조에서는²⁾ 공평한 배심원에 의한 빠르고 공개적인 재판을 포함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해당 권리는 많은 국가들의 국내법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국제법 (특히, 국제인권법 및 국제형사법) 에서도 인정되어 왔다.³⁾ 예를 들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의 제14조에서는 “모든 인간은 재판소 앞에서 평등”하며 상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언급했던 “법률에 의해 설치된 권한있는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원에 의해 재판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⁴⁾ 또한,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규정(Statute)의 제20조와 제21조에서는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다양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제21조(4)항에서는 상기 언급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제14조의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다.⁵⁾

이처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다양한 국제협약에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권리가 국제관습법의 위치를 점하는지 여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 왔는데, 일부 학자 및 전문가들은 조약규정 및 국제기구들의 관행을 토대로 해서 볼 때 해당 권리가 국제관습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상기 논의한 것처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인권협약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을 포함한 국제형사재판소들의 규정에 규정되어 있고 특히,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들의 국내법에서도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해당 권리에 관련된 (국제관습법의 충족요건인) 국가들의 일반적인 관행 및 법적 확신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⁶⁾ 심지어, 일부 국제기구의 관행을 들어 이들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어느 정도의 예외를 제외한다면) 국제법상 일탈이 허용되지 않는 강행규범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

* 본 논문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2025년도 국제 지재권 분쟁 대응기반 구축 위탁사업의 일환으로 업로드 된 주제별 분석 보고서를 수정 및 보완한 글임을 밝힙니다.

1) Ian Langford, “Fair Trial: The History of an Idea”, *Journal of Human Rights*, Vol.8(2009), p. 37; United Nations, *Human Rights in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A Manual on Human Rights for Judges, Prosecutors and Lawyers*, United Nations, 2003, p. 215.

2) Amendment VI (In all criminal prosecutions, the accused shall enjoy the right to a speedy and public trial, by an impartial jury of the state and district wherein the crime shall have been committed, which district shall have been previously ascertained by law, and to be informed of the nature and cause of the accusation; to be confronted with the witnesses against him; to have compulsory process for obtaining witnesses in his favor, and to have the assistance of counsel for his defense.); US Congress,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Sixth Amendment”, Congress.Gov, <<https://constitution.congress.gov/constitution/amendment-6/>>, 검색일: 2025. 6. 6.

3) Judge Patrick Robinson, “The Right to a Fair Trial in International Law, with Specific Reference to the Work of the ICTY”, *Berkeley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Publicist*, Vol.3(2009), p. 1.

4) 해당 조항의 해석에 대해서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인권위원회의 다음 일반적 논평을 참고할 것: Human Rights Committee (HRC), “General Comment No. 32, Article 14, Right to equality before courts and tribunals and to fair trial”, CCPR/C/GC/32, United Nations, 2007. pp. 1-18. 참고로, 해당 조항의 개관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것: 원유민, “국제인권규약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서울국제법연구』, 제29권 제1호(2022), 176-180면.

5) Judge Patrick Robinson, *supra* note 3, p. 8.

6) Amal Clooney & Phillipa Webb, *The Right to a Fair Trial in International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21, p. 14; Judge Patrick Robinson, *supra* note 3, p. 5.

다.⁷⁾

이러한 다양한 법체계에서 발전되어 온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는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간주되고 있는데, 관련 문헌에 따르면 주요 구성권리에는 크게 ① 법 앞에서 또는 재판소 앞에서의 평등에 대한 권리(Right to equality before the law or, right to equality before courts and tribunals) (즉, 모든 당사자들은 법이 적용되는 방식에서나 또는 소송절차에서 차별받아서 안 된다는 권리), ② 법률에 의해 설치된 권한있는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원에 의해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The right to be tried by a competent, independent and impartial tribunal established by law) (즉, 법적 구속력을 가진 판결을 내릴 수 있고, 명확히 규정된 법률에 의해 설치된, 외부로부터의 영향을 받지 않는, 편견을 가지지 않는 법원에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 및 ③ (재판 자체가 공개적으로 개최될 것과 판결이 공개될 것 등으로 구성되는) 공개적인 재판에 대한 권리 등이 포함된다.⁸⁾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근본적 성격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의 실제적 적용 및 해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즉, 해당 권리는 상기 언급한 것처럼 여러 국가들의 국내법과 다양한 분야의 국제법 특히, 국제협약에서 규정되어 왔기 때문에, 해당 권리가 실제로 어떻게 사법기관들에 의해 적용 및 해석되어 왔는지에 대해 논의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법 중 국제지식재산권협약 특히, 유럽에서의 지식재산권 중 특허의 허가 및 보호를 위해 채택된 유럽특허협약(European Patent Convention)의 해석 및 적용을 담당하고 있는 유럽특허청 항소위원회(European Patent Office, Boards of Appeal)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에 관련된 판례에 중점을 두어 논의를 해 보고자 한다. 이는 본 논문의 아래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처럼 해당 사법기관이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즉, 해당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한) 구두심리를 받을 권리 (right to oral proceedings)를⁹⁾ 해석 및 적용하는데 있어 다소 제약을 인정하였다는 점에 있어 흥미로운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이다.¹⁰⁾ 다시 말해서, 해당 항소위원회는 구두심리를 받을 권리에 관한 규정을 해석하는데 있어 그 절대적인 성격을 인정하는 동시에 그 제한 또는 예외에 대해서도 인정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특허의 적절한 보호 및 집행이라는 측면에 있어 구두심리를 받을 권리를 해석한 유럽특허청 항소위원회의 판례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7) Judge Patrick Robinson, *supra* note 3, p. 7.

8) 참고로, 해당 주요 구성권리의 내용에 관해서는 Daniel Moeckli et al.,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22, pp. 271-277. 및 Amal Clooney & Philippa Webb, *The Right to a Fair Trial in International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21, pp. 67-196, 720-775.

9) 본문의 논의된 유럽특허협약, 국제인권규약, 유럽인권협약 등의 국제협약들은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규정하는데 있어 모두 서로 다른 용어(즉, 유럽특허협약 제116조의 경우 right to oral proceedings,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경우 right to a fair and public hearing, 유럽인권협약의 경우 right to a fair trial)를 채택하고 있으나, 이들 모두 서면절차와 함께 구두변론 또는 구두심리 또는 구술심리와 같은 절차를 포함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동일한 또는 상당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본 논문의 중점인 구두심리가 개최될 수 있는지 여부(또는, 제한되는지 여부)가 (유럽특허협약상) 구두심리를 받을 권리를 포함한 해당 권리들의 침해여부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 논문에서는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및 구두심리를 받을 권리를 동일한 의미로 간주하여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10) 참고로, 본 논문의 아래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처럼, 유럽특허체제의 가장 근본적인 법적 규범인 “유럽특허협약”에서는 “유럽특허청”을 설립하고 있으며, 유럽특허에 관해서 생긴 분쟁을 다루기 위한 절차로 “유럽특허청 내의 각 부서”를 그 첫 번째 절차(first instance)로 두고 있다. 해당 첫 번째 절차에서 해결되지 않은 분쟁의 해결을 위해 유럽특허협약에서는 “항소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데 비록, 그 명칭은 국제재판소가 아니지만 동 항소위원회는 제기된 항소를 심의할 권한을 가진 사법기관(judicial instance)이다. 이에 관한 설명 및 특히, 항소위원회의 권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유럽특허협약 제21조의 내용은 다음 사이트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uropean Patent Office (EPO), “Boards of Appeal”, EPO.org, <<https://www.epo.org/en/case-law/appeals>>, 검색일: 2025. 5. 30; European Patent Office (EPO), “Article 21 of the European Patent Convention”, EPO.org, <<https://www.epo.org/en/legal/epc/2020/a21.html>>, 검색일: 2025. 5. 30.

이를 위해 우선, 본 논문에서는 구두심리를 받을 권리에 관련된 유럽특허협약 및 관련 규정의 간략한 개관 즉, 입법동향에 대해 알아본 뒤 구두심리를 받을 권리에 관련하여 그 절대적인 성격을 인정한 판례와 그 예외를 인정한 판례로 나누어 유럽특허청 항소위원회가 어떤 입장을 견지하였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특히, 가장 최근 주요 사건인 N.N. v EPO 사건에서 이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진행하였으므로 해당 사건에 대해 상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해당 판례의 분석을 토대로, 본 논문에서는 관련 판례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 알아본 뒤 마지막으로 해당 판결들에 대해 검토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는데 이는 구두심리를 받을 권리가 절대적 성격을 가진 근본적인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동 항소위원회가 여러 경우 제한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해당 판결들이 구두심리를 받을 권리의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질문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 후 이에 관한 간략한 제언을 한 뒤 논의를 마치도록 하겠다.

2. 유럽특허체제상 구두심리를 받을 권리에 관련된 입법동향

유럽 차원에서 특허를 보호하고 출원 및 허가 등을 포함한 절차의 통일화(harmonization)를 목적으로 1973년에 유럽특허협약(European Patent Convention)이 채택되었으며, 해당 협약의 이행과 특허체제의 운영을 위해 유럽특허기구(European Patent Organization)가 설립되었고, 해당 유럽특허기구는 크게 유럽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과 행정위원회(Administrative Council)로 나누어진다.¹¹⁾ 이들 중, 유럽특허에 관한 여러 실체적·절차적 사항을 다루는 유럽특허청의 주요 조직으로는 수령부(a Receiving section), 심사부(Examining Divisions), 이의부(Opposition Divisions), 법률부(a Legal Division), 항소위원회(Boards of Appeal) 및 확대항소위원회(an Enlarged Board of Appeal) 등이 포함된다.¹²⁾ 해당 조직들 중 항소위원회는 기술항소위원회(the Technical Boards of Appeal), 법률항소위원회(the Legal Board of Appeal) 및 징계항소위원회(the Disciplinary Board of Appeal) 등으로 구성된다.¹³⁾ 해당 항소위원회들은 유럽특허청 수령부, 심사부, 이의부 및 법률부 등의 결정을 상대로 유럽특허권자 또는 유럽특허출원자와 같은 개인이 항소를 제기할 경우 해당 분쟁을 다루는 주요 사법기관이며, 당해 분쟁의 성격에 따라 법적 역량이 있는 재판관 또는/그리고 기술적 역량이 있는 재판관들로 구성된다.¹⁴⁾

상기 유럽특허체제에 대한 간략한 개관을 토대로, 본 논문의 주요 쟁점인 “구두심리를 받을 권리”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조항인 유럽특허협약 제116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Oral proceedings shall take place either at the instance of the European Patent Office if it considers this to be expedient or at the request of any party to the proceedings. However, the European Patent Office may reject a request for further oral proceedings before the same department where the parties and the subject of the proceedings are the same.

(2) Nevertheless, oral proceedings shall take place before the Receiving Section at the request of the applicant only where the Receiving Section considers this to be expedient or where it intends to refuse the European patent application.

(3) Oral proceedings before the Receiving Section, the Examining Divisions and the Legal Division

11) European Patent Convention, article 4(2).

12) Ibid, article 15.

13) European Patent Office (EPO), “About the Boards of Appeal”, EPO.org, <<https://www.epo.org/en/case-law/appeals/organisation>>, 검색일: 2025. 5. 30.

14) European Patent Convention, article 21.

shall not be public.

(4) Oral proceedings, including delivery of the decision, shall be public, as regards the Boards of Appeal and the Enlarged Board of Appeal, after publication of the European patent application, and also before the Opposition Divisions, in so far as the department before which the proceedings are taking place does not decide otherwise in cases where admission of the public could have serious and unjustified disadvantages, in particular for a party to the proceedings.

상기 조항의 주요 내용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면, 구두심리는 유럽특허청이 필요하다고 간주하거나 분쟁당사자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최될 수 있으며, 동일한 분쟁당사자들에 의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동일한 유럽특허청의 부서(division)에 대해 추가적으로 구두심리가 요청될 경우 해당 요청은 거절될 수 있다. 그러나, 유럽특허청 수령부가 필요하다고 간주하거나 수령부가 특정 유럽특허를 거절하려고 하는 경우라면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구두심리는 개최되어야 한다.

실제 소송절차에서 구두심리는 유럽특허체제상 분쟁당사자들에게 서면절차 이후 자신의 주장을 유럽특허청에 대해 개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간주되기 때문에, 많은 분쟁당사자들은 유럽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하거나, 이의청구를 제기할 때 조건부 구두심리개최 요청(making a conditional request for oral proceedings)을 제출하는 것이 권장되며 실제로 이러한 요청은 많은 사건에서 발견되고 있다.¹⁵⁾

상기 유럽특허협약 제116조를 토대로, 유럽특허협약 이행규정(Implementing Regulations to the Convention on the Grant of European Patents)의 제7부에서는 구두심리 및 증거채택에 관한 다양한 절차적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데, 특히 해당규칙 제115조에 따르면 특정 구두심리에 소환(summon)되기 전 2개월의 기간이 주어지며 만약 특정 당사자가 해당 구두심리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구두심리는 해당 당사자 없이 진행될 수 있다.¹⁶⁾

마지막으로, 구두심리의 형태에 관련하여 항소위원회에서의 구두심리의 경우 온라인(Video conference) 및 오프라인(in-person) 형태가 모두 가능하나 유럽특허청 심사부 및 이의부에서 개최되는 구두심리의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온라인으로 개최된다.¹⁷⁾

3. 유럽특허체제상 구두심리를 받을 권리에 관련된 판례동향

3.1. 구두심리를 받을 권리에 관련된 유럽특허청 항소위원회의 주요 판례 개관

3.1.1. 절대적 성격을 인정한 관련 판결들의 주요 내용

상기 언급한 것처럼 유럽특허청 항소위원회의 판례에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권리의 절대적 성격에 대해 인정해 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에 관련된 주요 사건들을 중심으로 간략한 사건의 경과 및 항소위원회 판결의 주요 내용과 함께 특히, 공정한 구두심리를 받을 권리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15) Mewburn Ellis, "Oral Proceedings", Mewburn Ellis, <<https://www.mewburn.com/law-practice-library/oral-proceedings>>, 검색일: 2025. 5. 29.

16) Rule 115 (Summons to oral proceedings)

(1) The parties shall be summoned to oral proceedings under Article 116, drawing their attention to paragraph 2 of this Rule. At least two months' notice of the summons shall be given, unless the parties agree to a shorter period.

(2) If a party duly summoned to oral proceedings before the European Patent Office does not appear as summoned, the proceedings may continue without that party.

17) Mewburn Ellis, supra note 15.

첫째로, Vai Pomini S.r.l. v European Patent Office 사건 (사건번호: T 0777/06 - 3.2.04)에서 유럽특허 0848138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던 Vai Pomini S.r.l.은 유럽특허청 이의부에 만약 해당특허를 유지하기로 결정할 경우 구두심리를 개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¹⁸⁾ 향후, Vai Pomini S.r.l.은 유럽특허청 기술항소위원회에 항소를 제기하면서 유럽특허청 이의부가 자신이 요청한대로 구두심리를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한 절차적 위반이 발생했다고 주장하였다.¹⁹⁾ 해당 항소에 대해 동 기술항소위원회는 유럽특허청 이의부가 구두심리를 개최하지 않고 Vai Pomini S.r.l.가 제기한 이의를 거절하면서 해당 특허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은 관련 조항인 유럽특허협약의 제116조상 절차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유럽특허청 이의부의 해당 결정은 취하된다고 결정하였다.²⁰⁾ 특히, 구두심리 개최에 대한 권리에 관하여 동 항소위원회는 유럽특허소송절차에 있어 근본적인 성격의 절차적 권리라고 전제하면서, 유럽특허협약 제116조에서 이러한 권리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²¹⁾ 또한, 해당 조항이 의무적 성격의 조항이기 때문에 절차적 경제성이나 소송의 신속한 진행 등을 고려하기 위한 여지가 없으므로 구두심리 개최요청이 제출되었을 경우 이는 개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²²⁾

둘째로, N.V. DSM v 유럽특허청 이의부 사건(사건번호: T 383/87)에서 유럽특허 0002606에 대해 N.V. DSM은 해당 특허가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당 특허의 취소를 유럽특허청 이의부에 요청하였다.²³⁾ 해당 요청에 대해 유럽특허청 이의부는 해당 특허를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제기된 취소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이에 불복한 N.V. DSM은 유럽특허청 기술항소위원회에 해당 기각결정을 상대로 항소를 제기하였다.²⁴⁾ 향후, 1989년 4월26일에 개최된 구두심리에서 N.V. DSM과 특허권자인 Mobil Oil Corporation은 자신들이 기존에 제출했던 견해를 확인하면서, N.V. DSM은 동 기술항소위원회에 상기 기각결정을 취하하고 해당 특허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Mobil Oil Corporation은 제기된 항소가 기각되고 구두심리 개최로 인한 비용 중 상당부분이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²⁵⁾ 해당 항소에서 동 기술항소위원회는 심의 끝에 해당 항소를 기각한다고 결정하였으나, Mobil Oil Corporation가 주장한 구두심리 개최로 인한 비용의 환급에 대해서는 거절하는 결정을 내렸는데 이에 대한 근거로써 “비록, N.V. DSM이 당해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적었다고는 하나, 유럽특허협약 제116조에서 구두심리는 당사자의 요청시 개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오직 법이 남용된 경우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해당 요청은 거절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구두심리 개최비용이 환급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²⁶⁾ 이와 함께, 동 기술항소위원회는 당해 사건에서의 구두심리 개최에 대한 권리에 관련하여 ① 유럽특허협약 제116조(1)항에서는 모든 당사자들의 구두심리 개최요청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 ② 특정 분쟁당사자는 새로운 주장이 없더라도 구두로 보다 명백하게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점, ③ 추가적인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구두심리 개최요청을 하지 못해서는 안 된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

18) European Patent Office, Decision of the Technical Board of Appeal 3.2.04 of 5 December 2006, Summary of Facts and Submissions, para. II.

19) Ibid, para. III.

20) Ibid, Reasons for Decision, paras. 2.2-2.3.

21) Ibid, para. 2.

22) Ibid, (... This provision is *mandatory and leaves no room for discretion* to take into account considerations as speedy conduct of the proceedings, equity or procedural economy. *If such request has been made, oral proceedings have to be appointed ...* (emphasis added)).

23) European Patent Office, Decision of the Technical Board of Appeal 3.3.2. of 26 April 1989, Summary of Facts and Submissions, paras. I and II.

24) Ibid, paras. III and V.

25) Ibid, para. VII and VIII.

26) Ibid, Reasons for Decision, para. 9.

다.²⁷⁾

셋째로, Leonhard Kurz GmbH & Co. v 유럽특허청 이의부 사건(사건번호: T 125/89 - 3.2.3.)에서 Leonhard Kurz GmbH & Co.는 유럽특허 0106695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유럽특허청 이의부는 해당 이의청구를 거절하고 해당 특허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²⁸⁾ 해당 유럽특허청 이의부 결정에 불복한 Leonhard Kurz GmbH & Co.는 유럽특허청 항소위원회에 해당 결정을 상대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해당 특허의 취소를 요구하였으며²⁹⁾ 이에 반해, 특허권자인 Scott Paper Company는 해당 특허의 유지를 동 항소위원회에 요청하였다.³⁰⁾ 해당 특허 및 양 분쟁당사자들의 주장을 검토한 동 항소위원회는 결국 상기 유럽특허청 이의부의 결정을 취하한다고 판시하였는데 이때, Leonhard Kurz GmbH & Co.는 유럽특허청 이의부의 “특정 소송당사자가 구두심리 개최를 요청하였는데 해당 구두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새롭고 구체적인 주장을 제기하지 못했을 경우, 유럽특허청 이의부는 구두심리 개최비용의 상이한 부담이 적절한지 고려할 수 있다”는 언급에 대한 동 기술항소위원회의 견해를 요청하였다.³¹⁾ 해당 요청에 대해 동 기술항소위원회는 “유럽특허청 소송당사자들은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가지며 이에 관련된 유럽특허협약 제113조 및 116조의 규정들은 ‘새롭고 구체적인’이라는 요건에 의해 제약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상기 이의부의 견해는 유럽특허협약에 상응하지 않는다”라고 전제하면서 “이들은 이미 개진했던 견해를 강조할 권리를 가지며 상기 이의부의 언급은 일반적인 소송이 아닌 명백한 소권남용의 경우에 국한된다”고 강조하였다.³²⁾

3.1.2. 예외적 성격을 인정한 관련 판결들의 주요 내용

상기 사건들에서 유럽특허청 항소위원회는 공정한 구두심리를 받을 권리를 명백하게 (그리고, 예외없이) 근본적인 성격의 권리로써 인정하였다. 그러나, 본 논문의 아래에서 논의하는 바와 같이 다른 관련 사건들에서 동 항소위원회는 이러한 절대적 성격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그 예외 또는 제한에 대해서도 인정해 왔다. 따라서, 이에 관련하여 동 항소위원회가 어떤 이유로 어떻게 해당 예외 또는 제한에 대해 인정하였는지 일부 주요 사건들을 중심으로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첫째로, The Upjohn Company v 유럽특허청 수령부 사건 (사건번호: J 20/87)에서 The Upjohn Company는 1986년 7월에 출원된 해외특허출원 (출원번호: 01635)에 따라 1986년 10월8일에 유럽특허출원을 하였으며 (출원번호: 86307766.5) 해당 출원에 대한 심사료를 지불하였으나 우선권은 청구하지 않았다.³³⁾ 특히, 이때 The Upjohn Company는 해당 출원에 대한 심사료의 일부를 환불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³⁴⁾ 향후, 1986년 11월17일에 유럽특허청 수령부는 The Upjohn Company에게 상기 두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료가 환불될 수 없다고 통지하였으며, 이에 대해 The Upjohn Company는 해외특허출원 (출원번호: 01635)에 대한 심사료 환급불가에는 동의하나, 유럽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료 환불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형평의 원칙을 인용하였다.³⁵⁾ 그러나, 1987년 1월 동 수령부는 심사료 환불요청이 수락될 수

27) Ibid.

28) European Patent Office, Decision of the Technical Board of Appeal 3.2.3 of 10 January 1991, paras. I-III.

29) Ibid, para. IV.

30) Ibid, para. VIII.

31) Ibid, Reasons for Decision, para. 7.

32) Ibid.

33) European Patent Office, Decision of the Legal Board of Appeal of 30 July 1987, paras. I and II.

34) Ibid, para. II.

35) Ibid, para. III.

없다고 결정하면서, 그 근거로 The Upjohn Company가 우선권을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규정인 유럽특허협약규칙 제10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언급하였다.³⁶⁾ 해당 결정에 대해 The Upjohn Company는 유럽특허청 법률항소위원회에 항소를 제기하면서 동 수령부의 해당 결정이 취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와 함께 구두심리를 개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³⁷⁾ 해당 항소에 대해 법률항소위원회는 동 수령부가 언급한 것처럼 The Upjohn Company가 우선권을 청구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상기 조항의 요건이 충족되지 못했고 결론적으로 해당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다.³⁸⁾ 특히, 당해 사건에서 상기 언급한 구두심리의 개최에 대해 동 법률항소위원회는 The Upjohn Company가 제출한 항소근거에 관련 주장이 모두 언급되어 있으며, 구두심리에서 추가적으로 구체화 되어야 할 사실사항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당해 사건에서 구두심리의 개최는 필요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하였다.³⁹⁾

둘째로, IGEN, INC. v 유럽특허청 사건에서 IGEN, INC.는 자신의 미국특허를 해외출원하면서 유럽특허청에 출원을 하였는데 (출원번호: 85900344.3) 해당 출원은 미국변리사에 의해 진행되었다.⁴⁰⁾ 1985년 7월 유럽특허청 수령부는 해당 미국변리사에게 IGEN, INC.는 유럽변리사에 의해 대리되어야 한다고 통지하면서, 당해 9월에 IGEN, INC.에게 10월까지 해당 특허의 심사 관련 비용이 지불되어야 한다고 통지하였다.⁴¹⁾ 그러나, IGEN, INC.는 해당 통지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동 수령부는 IGEN, INC.에게 해당 특허출원이 철회된다고 통지하였다.⁴²⁾ 향후, 1998년 6월, IGEN, INC.는 마침내 유럽변리사를 선임하여 자신의 상기 특허출원에 대한 권리를 복구해 줄 것 및 추가적으로 상기 절차를 진행해 줄 것에 관련된 요청을 제출하였으나, 동 수령부는 두 가지 요청을 모두 거절하였다.⁴³⁾ 이에 따라, IGEN, INC.는 해당 수령부의 결정을 상대로 유럽특허청 법률항소위원회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⁴⁴⁾ 동 법률항소위원회는 상기 수령부의 결정을 확인하면서 제출된 상기 요청들을 거절하였다.⁴⁵⁾ 특히, IGEN, INC.가 제출한 항소근거에서 만약 동 법률항소위원회가 해당 항소를 기각할 의도라면 자신은 구두심리의 개최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는 언급에 대해, 동 법률항소위원회는 해당 언급이 구두심리 개최의 요청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기 권리복구 요청의 기준이 미충족 되었다는 점 및 추가절차의 진행적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당해 사건에서 구두심리 개최의 필요성은 없다고 판시하였다.⁴⁶⁾

셋째로, Roche Diagnostics GmbH & F. Hoffmann-La Roche AG v 유럽특허청 사건 (사건번호: T 1367/12 - 3.5.05)에서 특허권자인 Roche Diagnostics GmbH & F. Hoffmann-La Roche AG는 자신의 유럽특허(특허번호: 1281351)를 취소한 유럽특허청 이의부의 결정에 대해 유럽특허청 기술항소위원회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해당 항소에서 해당 이의부의 결정을 취하하고 자신의 특허를 유지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다.⁴⁷⁾ 해당 항소에서, 동 기술항소위원회는 해당 특허가 적절히 공개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해당 특허가 적절히 공개되어 있으며 관련

36) Ibid, para. IV.

37) Ibid, para. V.

38) Ibid, Reasons for Decision, paras. 4 and 7.

39) Ibid, para. 2.

40) European Patent Office, Decision of the Legal Board of Appeal of 8 March 1990 [J 15/89], para. I.

41) Ibid, paras. II and III.

42) Ibid, para. IV.

43) Ibid, paras. VI and VII.

44) Ibid, para. VIII.

45) Ibid, Reasons for Decision, paras. 3 and 4.

46) Ibid, para. 5.

47) European Patent Office, Decision of the Technical Board of Appeal 3.5.05 of 22 January 2016, paras. I-IV.

기술을 가진 자가 해당 특허출원서에서 충분한 정보를 발견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⁴⁸⁾ 그러나, 동 기술항소위원회는 해당 특허에 이의를 제기했던 Medtronic MiniMed, Inc.가 유럽특허청 이의부에 제기했던 이의 근거 중 일부가 동 이의부에 의해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특허를 유지하는 결정이 아닌 해당 사건을 유럽특허청 이의부로 회부하는 결정을 내린다고 판시하였다.⁴⁹⁾ 특히, 동 기술항소위원회는 유럽특허청 이의부로 해당 사건을 회부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는 분쟁당사자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간주될 수 없고 이에 따라, 구두심리가 개최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⁵⁰⁾

넷째로, Siemens Aktiengesellschaft v 유럽특허청 이의부 사건(사건번호: T 2377/19 - 3.5.02)에서 Siemens Aktiengesellschaft는 ABB Schweiz AG의 특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유럽특허청 이의부는 해당 이의청구를 거절하였고, 이에 따라 Siemens Aktiengesellschaft는 해당 이의부의 결정을 상대로 유럽특허청 기술항소위원회에 항소를 제기하였다.⁵¹⁾ 해당 항소에서 Siemens Aktiengesellschaft는 상기 이의부의 결정을 취하해 주거나 만약 자신의 결정이 수락되지 않을 경우 구두심리의 개최를 요청하였다.⁵²⁾ 향후, 유럽특허청 항소위원회 등기소(registry)는 Siemens Aktiengesellschaft에게 항소이유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항소가 거절된다고 통지하면서, Siemens Aktiengesellschaft에게 해당 통지 발송 후 2개월 이내에 이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라고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답변이 제출되지 않았다.⁵³⁾ 이에 대해, 동 기술항소위원회는 항소이유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함께 상기 통지에 대한 답변 역시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항소이유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점 이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구두심리의 개최는 합당한 목적을 가지지 못하며 이에 따라, 구두심리의 개최에 관한 상기 요청을 거절하고 해당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다.⁵⁴⁾

다섯째로, Koninklijke Philips Electronics N.V. v 유럽특허청 심사부 사건 (사건번호: T 1042/07 - 3.4.01)에서 Koninklijke Philips Electronics N.V., et al은 자신의 유럽특허출원(출원번호: 02714377.5)을 거절한 유럽특허청 심사부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유럽특허청 기술항소위원회에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때 구두심리의 개최를 요청하였다.⁵⁵⁾ 이때, 해당 항소의 근거를 Koninklijke Philips Electronics N.V., et al은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동 기술항소위원회는 통지를 전달하였으며 향후 Koninklijke Philips Electronics N.V., et al은 관련 수수료의 환급을 조건으로 자신의 출원을 철회한다고 통지하였다.⁵⁶⁾ 그러나, Koninklijke Philips Electronics N.V., et al은 항소근거 미제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⁵⁷⁾ 이에 대해, 동 기술항소위원회는 우선, 상기 언급한 것처럼 항소근거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항소는 거절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⁵⁸⁾ 이와 함께, 상기 조건부 출원철회 통지에 대해서, 당해 사건에서 Koninklijke Philips Electronics N.V., et al가 항소근

48) Ibid, Reasons for Decision, para. 2.11.

49) Ibid, para. 3.

50) Ibid.

51) European Patent Office, Decision of the Technical Board of Appeal 3.5.02 of 23 August 2021, paras. I and II.

52) Ibid, para. II.

53) Ibid, paras. III and IV.

54) Ibid, Reasons for Decision, para. 2.

55) European Patent Office, Decision of the Technical Board of Appeal, 3.4.01 of 22 August 2008, paras. I and II.

56) Ibid, paras. III-V.

57) Ibid, para. V.

58) Ibid, Reasons for Decision, para. 1.

거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소료 환급을 위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동 기술항소위원회는 언급하였다.⁵⁹⁾ 또한, 관련 규정인 유럽특허협약 제108조에 따르면, 항소 수수료는 항소가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때 환급되어야 하나, 당해 사건의 경우 항소 통지가 제출되었고 항소료가 기한내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항소는 제기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지적하면서, 항소료 환급이 불가하다고 결정하였다.⁶⁰⁾ 특히, 상기 구두심리 개최요청에 대해 동 기술항소위원회는 구두심리 개최에 대한 권리가 근본적 성격의 권리이며 요청이 있을 경우 개최되는 것이 유럽특허청의 주요 관행이라는 점을 확인하였으나, 당해 사건에서 Koninklijke Philips Electronics N.V., et al는 항소근거가 왜 제출되지 않았는지 설명하지 않았으며, 상기 통지에 대한 답변에서도 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 기술항소위원회는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을 구두심리 개최에 대한 요청이 포기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판시하였다.⁶¹⁾

3.2. 구두심리를 받을 권리에 관한 주요 사건인 N.N. v EPO 사건의 분석

3.2.1. 사건의 경과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특허권자인 N.N.(무기명)은 유럽특허(해외)출원을 위한 7번째 갱신료를 2020년 6월30일까지 납부해야 하였으나, 해당 기한이 경과하였고 이에 따라, 유럽특허청 심사부는 해당 갱신료 및 추가수수료가 상기 일자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되어야 하면서 만약 해당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기 특허출원은 취소될 것이라고 N.N.에게 통지하였다.⁶²⁾ 참고로, 이때 N.N.의 유럽측 대리인은 T 기관의 ST 였다.⁶³⁾

향후, 유럽특허청 심사부는 상기 갱신료 및 추가수수료가 납부되지 않음에 따라 유럽특허협약 및 규칙의 관련 규정들(즉, 유럽특허협약 제86조(1)항 및 유럽특허협약 규칙 제112조(1)항)에 근거하여 해당 특허출원이 취소되며, 이에 대한 시정조치로써 유럽특허협약 제122조에 따른 권리복구가 요청될 수 있다고 N.N.에게 고지하였다.⁶⁴⁾

이에 따라, N.N.은 새로운 유럽측 대리인인 W사에 속한 K를 통해 상기 갱신료 및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복구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진술서(witness statement)에서 당해 사건의 모든 분쟁당사자가 취해야 할 상당한 주의(due care)를 다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특히, 만약 추가 서면절차 없이 해당 권리복구에 관한 요청이 거절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구두심리를 개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⁶⁵⁾ 이와 함께, N.N.은 상기 갱신료, 추가수수료 및 권리복구 수수료를 모두 납부하였으며⁶⁶⁾ 특히, 자신의 미국 대리인인 F에게 관련 절차를 관찰하고 유럽특허청 관련 대리인에게 이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연락할 것을 위임하였으나, F는 ST 및 N.N.에게 수수료 납부에 관하여 통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⁶⁷⁾ 또한, N.N. 자신과 가족들이 2020년말부터 2021년초까지 질병에 걸렸으며 F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였으나 아무런 대답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다.⁶⁸⁾

상기 주장에 대해 유럽특허청 심사부는 상기 언급된 수수료의 기한내 미납부에 관해 제출된

59) Ibid, para. 2.1.

60) Ibid, paras. 2.2. and 2.3.

61) Ibid, para. 2.3.

62) European Patent Office, Decision of the Legal Board of Appeal 3.1.01 of 26 July 2023, paras. I and II.

63) Ibid, para. II.

64) Ibid.

65) Ibid, para. III.

66) Ibid.

67) Ibid.

68) Ibid.

이유들은 충분치 않기 때문에 추가 증거를 제출하라고 명령하였으나 N.N.은 이에 대해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동 심사부는 N.N.이 적절한 상당한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고 결정하였다.⁶⁹⁾

상기 결정에 대해 N.N.은 K를 통해 유럽특허청 법률항소위원회에 항소를 제기하면서 해당 결정을 변경해 주거나 혹은, 구두심리를 개최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때, 특별한 항소이유가 제출되지 않았다.⁷⁰⁾ 이에 따라, 유럽특허청 법률항소위원회는 2022년 7월15일에 유럽특허협약 제108조에 따라 해당 항소가 수락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데, 이는 해당 조항에서 유럽특허청 특정부서의 결정 채택 이후 4개월 이내에 항소이유가 제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었다.⁷¹⁾ 이에 따라, N.N.은 항소이유를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복구해 달라는 2번째 요청을 진행하였다.⁷²⁾ 이때 N.N.은 자신의 유럽측 대리인인 K의 건강상태를 인용하면서 만약 자신의 2번째 권리복구 요청이 거절될 경우 구두심리의 개최를 요청한다고 언급하였고 K가 작성한 진술서 및 병가신청서를 첨부하였다.⁷³⁾ 해당 진술서에서 K는 2022년 6월26일에 항소이유 제출기한이 만료되었는데 자신이 2022년 4월부터 6월말까지 특정 질병을 앓았다고 언급하면서 해당 증세는 점차 심해졌다고 주장하였다.⁷⁴⁾ 또한, K는 자신이 유일한 자신이 속해 있는 기업의 유럽특허청에 대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주체였으며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혼자 항소이유 제출과 관련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하였다.⁷⁵⁾ 특히, 이로 인해 N.N.에게 항소이유 제출의무에 대해 고지하지 못했으며 해당 기안 도래에 대한 리마인드에 대해서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고 이는 결국 질병이라는 일회성 사건(an isolated event) 때문이었다고 주장하였다.⁷⁶⁾

상기 진술서 제출과 함께 N.N.은 1번째 권리복구요청 (즉, 상기 갱신료 및 추가수수료 납부관련) 이 허가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그 당시 (즉, 갱신료 및 추가수수료를 미제출 했을 때) 유럽측 대리인인 ST가 F에게 수차례 수수료 납부에 관련하여 연락을 취하려고 노력하였으나 F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는데 이는 F의 담당자가 해당 기업을 퇴사했기 때문이었다고 강조하였다.⁷⁷⁾ 이를 통해, N.N.은 그 당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상당한 주의를 취했다고 주장하였으며 특히, F에 대한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F가 적시에 수수료를 제출할 것이라고 믿었다고 언급하면서, 자신은 적절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고 상기 문제들은 비정상적이고 예측불가능한 예외적인 사건(abnormal, unforeseeable and exceptional event)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⁷⁸⁾

결국 N.N.은 “항소이유를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복구해 줄 것”과 “상기 유럽특허청 심사부의 결정을 취하하고 갱신료 및 추가수수료를 제출할 수 있는 권리 역시 복구해 줄 것”이라는 내용을 골자로 유럽특허청 법률항소위원회에 항소를 제기하였다.⁷⁹⁾

69) Ibid, para. IV.

70) Ibid, para. VI.

71) Ibid, para. VII. (European Patent Convention, article 108.: Notice of appeal shall be filed, in accordance with the Implementing Regulations, at the European Patent Office within two months of notification of the decision. Notice of appeal shall not be deemed to have been filed until the fee for appeal has been paid. *Within four months of notification of the decision, a statement setting out the grounds of appeal shall be filed in accordance with the Implementing Regulations.* (emphasis added)).

72) Ibid, para. VIII.

73) Ibid.

74) Ibid, para. IX.

75) Ibid.

76) Ibid.

77) Ibid, para. X.

78) Ibid.

3.2.2. 유럽특허청 법률항소위원회의 판결

3.2.2.1. 항소이유 제출에 관한 권리의 복구

첫째로, 유럽특허청 법률항소위원회는 유럽특허협약 제122조(1)항에 따르면 “특정 분쟁당사자는 만약 해당 분쟁당사자가 취해야 할 모든 상당한 주의를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기한을 준수하지 못했다면 해당 기한에 관한 권리가 복구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⁸⁰⁾ 이와 함께, 동 항소위원회는 유럽특허협약 규칙 제136조(1)항에 따르면 권리복구요청은 기한 미준수를 발생케 한 원인이 제거된 지 2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유럽특허협약 제122조(2)항 및 규칙 136조(2)항에 따르면 권리복구 요청시 구체적으로 해당 요청의 근거와 사실사항 및 기한미준수의 원인, 언제, 어떤 상황에서 해당 원인이 발생하고 제거되었는지에 대해 언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였다.⁸¹⁾

특히, 단순히 일반적인 성격의 언급은 상기 구체적인 언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강조하였다.⁸²⁾ 또한, 특허출원자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모든 주체들은 상당한 주의를 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지적하면서 동 항소위원회는 모든 관련 주체들의 행위들은 해당 특허출원자에게 귀속된다고 지적하였다.⁸³⁾ 이와 함께, 유럽특허청 법률항소위원회는 모든 상당한 주의가 취해졌는지 여부를 평가하는데 있어 특정 사건의 모든 정황이 전체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만약 기한의 미준수가 예외적인 상황이나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점검체제에서 발생한 일회성 실수로부터 기인할 경우 해당 모든 상당한 주의가 취해졌다고 간주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⁸⁴⁾ 특히, 갑작스러운 질병 및 심각한 정신적 문제는 특정 경우에 예외적 상황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관련 항소위원회의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질병 및 다른 직원들의 부재와 같은 상황에 대비할 모든 상당한 주의를 다할 것이 요구된다고 동 항소위원회는 지적하였다.⁸⁵⁾

상기 사항들에 대한 확인을 토대로, 유럽특허청 법률항소위원회는 당해 사건에서 N.N.이 항소이유를 적시에 제출하지 못한 이유로 (또는, 모든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근거로) 자신의 유럽특허 법률대리인인 K의 질병을 제출하였으며 이는 K의 상기 진술서에 의해 보충되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⁸⁶⁾ 이를 토대로, 동 항소위원회는 유럽특허청 항소위원회의 관련 판례에 따르면, 상기 K가 제출한 진술서에서 상세한 사실사항 및 이유가 제공되었다면 권리복구를 위해 충분했을 수도 있으나, 해당 진술서에서는 왜 K가 항소이유를 제출할 수 없었는지, 상태가 정확히 어떠한 것인지, 어떤 행위가 (불)가능했었는지 등이 언급되어 있지 않으며 특히, 해당 진술서에서 K의 질병이 지속되었던 기간과 항소이유를 제출해야 했던 기간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였다.⁸⁷⁾ 특히, 동 항소위원회는 만약 K가 유일한 유럽특허 대리인이었다면 대체근무체제(substitution)가 구축되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⁸⁸⁾

이를 토대로, 유럽특허청 법률항소위원회는 취해져야 할 모든 상당한 주의가 취해지지 않았

79) Ibid, para. XI.

80) Ibid, Reasons for Decision, para. 1.

81) Ibid, para. 2.

82) Ibid.

83) Ibid, para. 3.

84) Ibid, para. 4.

85) Ibid, para. 5. 예를 들면, 유럽특허청 기술항소위원회는 T 387/11사건에서 1인 사무실을 운영하는 대리인이 질병으로 인한 부재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대리인을 고용함으로써 기한을 충족하도록 한 것을 충분한 상당한 주의가 취해졌다고 판시한 바 있다.

86) Ibid, para. 6.

87) Ibid, para. 7.

88) Ibid, para. 8.

다고 판시하였다.⁸⁹⁾

3.2.2.2. 유럽특허청 심사부의 상기 결정에 대한 항소

둘째로, 유럽특허청 법률항소위원회는 상기 언급한 것처럼 모든 상당한 주의가 취해지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항소이유가 적시에 (즉, 유럽특허협약 제108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유럽특허청 심사부의 결정일인 2022년 2월26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제출되지 못했고 따라서, 해당 항소는 수락가능하지 않다고 판시하였다.⁹⁰⁾ 특히, 동 항소위원회는 해당 항소에서 N.N.이 유럽측 대리인인 K와 자신의 상당한 주의만을 주장하였으며 미국측 대리인인 F가 모든 상당한 주의를 다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상기 언급한 “모든 관련 주체들의 행위들은 해당 특허출원자에게로 귀속된다”는 원칙을 간과한 주장이라고 설시하였다.⁹¹⁾

3.2.2.3. 서면절차에서의 결정

상기 논의들을 토대로, 유럽특허청 법률항소위원회는 항소이유 제출에 관한 N.N.의 2번째 권리복구 요청시 N.N.이 언급했던 “구두심리 개최”에 관한 심의를 진행하였다.

Eventualmixime 원칙의 확인 및 적용

우선, 유럽특허청 법률항소위원회는 상기 언급된 관련 규정인 유럽특허협약 규칙 제136조 (1)항에 따라 권리복구가 요청될 경우 해당 근거와 관련 사실이 명확히 제출되어야 하는데 이는 독일법 전통을 가지고 있는 관련 국내법에서 확인되는 *Eventualmaxime* 원칙 즉, “(권리복구) 요청시 모든 권리복구에 관한 근거와 증거가 즉각 그리고 완전히 제출되어야 한다(the request must state all grounds for reestablishment and means of evidence without the possibility of submitting these at a later stage)”는 원칙을 구현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⁹²⁾ 즉,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에만 (이전에 제출되었던 증거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관련 증거나 사실들이 향후에 ‘보충’ 될 수 있다는 것이다.⁹³⁾

해당 원칙에 대한 확인을 토대로, 동 항소위원회는 당해 사건에서 (즉, 2번째 권리복구요청에서) N.N.이 대체근무체제를 포함한 K의 질병에 대비한 어떠한 사실적 조치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⁹⁴⁾ 이에 따라, 권리복구 요청을 위한 즉각적이고 완전한 근거 및 증거의 제출이라는 요건이 미충족 되었다고 언급하면서 이로 인해 관련 증거나 사실들이 향후에 보충될 수도 없다고 강조하였다.⁹⁵⁾

결론적으로, 동 항소위원회는 구두심리 개최를 포함한 추가적인 절차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다고 결정하면서 구두심리의 개최는 어떠한 정당한 목적도 달성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⁹⁶⁾

구두심리 개최에 대한 권리에 관한 심의: 성격 및 제한

상기 논의를 토대로, 유럽특허청 법률항소위원회는 우선 상기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

89) Ibid, para. 9.

90) Ibid, para. 11.

91) Ibid, para. 12.

92) Ibid, paras. 13-15.

93) Ibid, para. 16.

94) Ibid, para. 17.

95) Ibid.

96) Ibid, para. 18.

복구에 관한 공정한 구두심리 개최”의 목적은 권리복구를 요청한 자에게 항소 서면절차에서 제출되지 않은 주장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의 제출이나 구체화를 위한 기회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 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⁹⁷⁾

이와 함께, 동 항소위원회는 일반적으로 구두심리 개최에 관한 유럽특허협약상의 권리 즉, 공정한 구두심리를 받을 권리에 대해, 관련 판례는 해당 권리의 절대적 성격(absolute right)을 인정하면서 특히, 단순히 시간을 지체한다는 이유만으로 구두심리 개최에 대한 요청이 거절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판시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⁹⁸⁾ 그러나, 이와 같은 공정한 구두심리를 받을 권리의 절대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동 항소위원회는 그 “제한”이 있다는 점 역시 간과하지 않았는데 특히, 동 항소위원회의 관련 판례들을 토대로 이를 설명하였다.⁹⁹⁾

우선, 동 항소위원회는 유럽특허협약 제116조(2)항에서 유럽특허청 수령부가 구두심리 개최 요청을 받을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¹⁰⁰⁾ 즉, 어떤 경우든지 반드시 구두심리 개최 요청에 응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동 항소위원회는 다수의 사건에서 구두심리 개최 요청이 제한되었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특히, 일부 사건에서 “공정한 구두심리를 받을 권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유럽특허협약 제116조(1)항의 범위가 매우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해당 권리의 성격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없으며, 해당 조항의 적용이 특정 사건에서 적절하지 않을 경우 해당 권리에 대한 예외가 존재할 수 있다.”¹⁰¹⁾ 및 “공정한 구두심리를 받을 권리는 법의 남용에 해당되는 예외적인 상황의 경우 거절될 수 있다.”¹⁰²⁾고 판시했다는 점을 재차 확인하였다.

이를 토대로, 동 항소위원회는 구두심리 개최가 불필요하게 소송을 지연시키는 경우라면 이는 법적 확실성이라는 원칙에 위배되며 또한 어떠한 합당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법적 확실성이라는 원칙은 (특히, 지식재산권 측면에 있어) 관련 판례에 따르면 근본적인 원칙으로 간주되어 왔기 때문에, 당해 사건의 경우처럼 만약 구두심리 개최가 어떠한 합당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라면 법적 확실성이라는 원칙이 (당사자의 요청에 따른) 구두심리 개최라는 목적에 우선한다고 판시하였다.¹⁰³⁾ 즉, 공정한 구두심리를 받을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구두심리 개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유럽특허협약 제116조에 대한 해석 관련

상기 구두심리 개최에 관련된 판례의 입장을 토대로, 유럽특허청 법률항소위원회는 관련 규

97) Ibid, para. 19.

98) Ibid, para. 20. 예를 들면, T 0777/06 사건에서 항소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구두심리 개최권리에 대해 판시한 바 있다.

... The right of parties to oral proceedings is a fundamental procedural right in proceedings before the EPO. The first sentence of Article 116 EPC makes it clear that a party is entitled to oral proceedings upon request. This provision is mandatory and leaves no room for discretion to take into account considerations as speedy conduct of the proceedings, equity or procedural economy. If such request has been made, oral proceedings have to be appointed ...

99) Ibid, para. 21.

100) Ibid, para. 22. European Patent Convention, article 116(2).

(2) Nevertheless, oral proceedings shall take place before the Receiving Section at the request of the applicant *only where the Receiving Section considers this to be expedient or where it intends to refuse the European patent application.* (emphasis added).

101) European Patent Office, Decision of the Enlarged Board of Appeal of 16 July 2019, Reasons B.II.2, B.II.5.

102) European Patent Office, Decision of the Technical Board of Appeal of 26 April 1989 [T 383/87], Reasons 9; European Patent Office, Decision of the Technical Board of Appeal of 18 August 1992 [T 318/91], Reasons 12.

103) European Patent Office, *supra* note 100, at paras. 33-34 and 37.

정인 유럽특허협약 제116조(1)항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였다.

이에 관하여, 동 항소위원회는 우선 관련 판례에서 자신이 적용해 왔던 비엔나조약법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의 제31조 및 32조 특히, 제31조에 대한 확인을 진행하였는데, 해당 조항에서는 국제협약 및 국제조약의 해석시 일반원칙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특히, 동 항소위원회는 해당 조항의 제1항에서 특정 조약의 용어를 해석할 때 해당 조항의 목적 및 객체에 따라 해당 용어의 일반적인 의미로부터 해석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단순한 문어적 해석을 벗어날 수 있으나 해당 조항의 목적에 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¹⁰⁴⁾ 이와 함께, 동 항소위원회는 관련 판례에서 비엔나조약법협약상 상기 원칙과 함께 “진화적 해석(dynamic or evolutive interpretation)”에 대해 언급해 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관한 조항인 비엔나조약법협약 제31조3항에서 “특정 조약 당사국들간의 차후 관행 및 합의”와 “당사국들간에 적용가능한 국제법상 관련 규칙” 등이 언급되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¹⁰⁵⁾ 특히, 인권보호를 위해 채택된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의 해석시 해당 협약의 서문에 규정되어 있는 협약의 목적과 함께 최근 사회의 경향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 법학관련 저서 및 학술지에 언급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동 항소위원회는 이러한 경향은 유럽특허협약의 해석에도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¹⁰⁶⁾

이를 토대로, 동 항소위원회는 유럽특허협약이 채택된 후에 발생해 온 관행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였는데 해당 관행에는 (i) 상기 Eventualmaxime 원칙이 발전하여 공정한 구두심리를 받을 권리와 절차적 경제(procedural economy)가 조율되도록 함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ii) 유럽특허의 중요성 증가 및 항소의 증가로 인한 항소위원회의 업무증가,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항소위원회의 적시 판결의 중요성, (iii) 국제인권법 및 유럽인권협약상 공정한 심리에 대한 권리의 진화 등이 지적되었다.¹⁰⁷⁾ 특히, 동 항소위원회는 유럽인권협약 제6조(1)항에 규정되어 있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a right to a fair trial)에 관한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의 발전에 대해 집중적으로 언급하였다.¹⁰⁸⁾

동 항소위원회에 따르면,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에서는 기본적으로 공공에서의 구두심리 또는 공청회의 개최를 분쟁당사자를 사적인 (또는, 비밀리에 행해지는) 사법집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절차법상 “근본적 원칙”이며, 이는 사법집행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사법체제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증진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¹⁰⁹⁾ 그러나, 동 항소위원회에 따르면 유럽인권재판소는 구두심리 개최가 생략(dispenze with) 될 수 있다는 점을 다수의 판례에서 확인하였는데 예를 들면, Axen v Germany 사건에서 특정 사건이 상기 유럽인권협약 제6조1항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1차 법원에서 심리되었다면 2차 또는 3차법원에서의 추가 구두심리 개최는 부적절하거나 또는 요구되지 않는다고 언급하였다.¹¹⁰⁾ 또한, 만약 특정 분쟁당사자가 서면절차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개진할 충분한 기회를 부여받았을 경우 또는 특정 사안이 중요한 사안이 아니었을 경우라면 구두심리개최가 생략될 수 있다고 유럽인권재판소가 판시하였다고 동 항소위원회는 확인하였다.¹¹¹⁾ 이외에도 유럽인권재판소에서 구두심리 개최의 생략을 정당화

104) Ibid, para. 40.

105) Ibid, para. 41.

106) Ibid, paras. 42-43.

107) Ibid, paras. 44-46.

108) Ibid, para. 47.

109) Ibid.

110) Ibid.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Axen v Germany, No 8273/78, para. 28. (... The Court accordingly finds that the absence of public hearings before the Federal Court of Justice did not, in the particular circumstances, infringe Article 6 para. 1 (art. 6-1)).

111) Ibid.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Jussila v Finland, No 73053/01, para. 48. (The Court further observes that the applicant was not denied the possibility of requesting an oral hearing,

하기 위한 근거로써 사법체제의 부족한 재정, 적시판결에 대한 수요 등이 인용되었다는 점 및 일부 항소의 경우 구두심리보다 서면절차가 보다 효율적이라고 언급했다는 점 등에도 동 항소위원회는 주목하였다.¹¹²⁾ 상기 언급한 판례들을 토대로, 유럽인권재판소가 *Kress v France* 사건을 포함한 일부사건에서 많은 당사국들이 많은 숫자의 사건을 담당해 왔으며, 유럽인권협약은 진화하는 문서(a living instrument)로써 간주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맞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고 동 항소위원회는 언급하였다.¹¹³⁾

최종결정

상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유럽인권재판소 판례의 자세에 관한 논의를 토대로, 유럽특허청 법률항소위원회는 유럽특허체제의 변화하는 정황을 고려해 보았을 때 유럽특허협약 역시 (유럽인권협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해석되어야 하며 따라서, 만약 구두심리 개최가 적절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단순히 소송절차를 지연하기만 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상기 유럽특허협약 제116조(1)항을 문언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해당 협약의 목적과 상반된다고 설시하였다.¹¹⁴⁾ 즉, 협의적 해석이 아닌 해당 조항의 목적과 객체를 고려한 진화적 해석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¹¹⁵⁾ 이에 관하여 동 항소위원회는 해당 조항의 목적은 구두심리의 개최가 합당한 목적을 달성하여 법적 확실성이라는 요건에 상반되지 않을 때 구두심리 개최에 대한 권리 즉, 공정한 구두심리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당해 사건과 같이 합당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구두심리 개최에 대한 권리보다 법적 확실성이라는 요건이 우선한다고 동 항소위원회는 결정하였다.¹¹⁶⁾

결론적으로, 유럽특허청 법률항소위원회는 N.N.이 요청한 구두심리는 개최될 수 없으며 권리복구에 관한 요청 역시 거절된다고 판시하였다.

4. 유럽특허청 항소위원회의 구두심리를 받을 권리에 관련된 N.N. v EPO 사건의 주요 특징 분석 및 검토와 제언

4.1. 주요 특징

상기 언급한 것처럼, 유럽특허협약 제1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두심리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 유럽특허청 법률항소위원회는 기본적으로 해당 권리의 절대적 성격을 여러 차례 인정해 왔으나, 이와 함께 다양한 이유 (즉, 구두심리에서 추가적으로 구체화되어야 할 사실사항이 발견되지 않는다, 권리복구 요청의 기준이 미충족되었다, 유럽특허청 이의부로 사건을 회부하였기 때문에 분쟁당사자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항소이유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점 이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다, 항소이유가 왜 제출되지 않았는지 설명을 하지 않

although it was for the courts to decide whether a hearing was necessary (see, *mutatis mutandis*, *Martinie v. France* [GC], no. 58675/00, § 44, ECHR 2006-VI). The Administrative Court gave such consideration with reasons. *The Court also notes the minor sum of money at stake. Since the applicant was given ample opportunity to put forward his case in writing and to comment on the submissions of the tax authorities, the Court finds that the requirements of fairness were complied with and did not, in the particular circumstances of this case, necessitate an oral hearing.* (emphasis added).

112) Ibid.

113) Ibid, para. 48.

114) Ibid, para. 49.

115) Ibid, para. 50.

116) Ibid, paras. 51 and 52.

았으며 이는 구두심리 개최에 대한 요청이 포기된 것으로 간주한다 등)에 근거하여 공정한 구두심리를 받을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 역시 다수의 사건에서 인정해 왔다.

이러한 판례를 토대로, 최근에 다루어진 N.N. v EPO 사건에서도 동 법률항소위원회는 해당 권리의 절대적 성격을 인정하면서도 그 제한에 대해 확인을 하였는데 특히, 당해 사건의 경우 해당 권리에 대한 제한을 판단하는데 있어 “조약의 해석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비엔나조약법협약 제31조의 인용”과 함께 이와 관련된 “유럽인권재판소의 유럽인권협약의 관련 규정에 대한 해석에 관련된 판결”을 자신의 판결에 대한 법적 근거로 활용하였다는 점이 주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상기 유럽특허청 법률항소위원회가 확인하고 있는 것처럼, 조약의 해석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비엔나조약법협약 제31조(1)항에서는 특정 조약의 용어를 해석할 때 해당 조항의 “목적 및 객체에 비추어” “그 문맥을 고려하여” 해당 용어의 “일반적인 의미”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¹¹⁷⁾ 동 항소위원회는 이러한 조약의 문언적 해석은 해당 조약의 목적에 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동 항소위원회는 조약의 진화적 해석 (evolutive interpretation)에 대해 언급을 하면서 이에 대한 근거로 비엔나조약법협약 제31조(3)항을 언급하였는데 해당 조항에서 조약 당사자들간의 추후합의, 추후관행 및 관련 국제법규 등이 규정되어 있다는 점 역시 확인하였다. 특히, 이러한 진화적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동 항소위원회는 특정 협약이 채택된 후 발생한 사실적 및 법적 정황으로 인해 해당 협약의 문언적 해석이 입법자의 의도와 달라질 경우라고 언급하였다.

이와 같이, 유럽특허청 법률항소위원회는 유럽특허협약을 해석하는데 있어 유럽특허협약의 해석 이후에 (상기 언급된) 사실적 및 법적 정황들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해당 정황들의 예로 통합특허법원의 출시와 단일특허의 등장, 특허출원 건수의 증가로 인한 유럽특허청의 과도한 업무량, 적절한 시간내 사건처리의 필요성 등을 언급하였고, 비엔나조약법협약 제31조 특히, 제(3)항에 근거하여 이들을 유럽특허협약 제116조(1)항을 해석하는데 있어 관련 정황으로써 고려하였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당해 사건에서 유럽특허청 법률항소위원회는 유럽특허협약 제116조(1)항의 공정한 구두심리를 받을 권리를 해석하는데 있어 비엔나조약법협약 제31조(1)항에 따른 문언적 해석에만 따를 경우 해당 권리의 절대적 성격이 확인될 수 있으나, 유럽특허협약 채택 이후 발생한 상기 정황들이 비엔나조약법협약 제31조(3)항에 의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였으며 그 결과, 당해 사건이 구두심리의 개최가 합당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구두심리가 개최될 경우 이는 입법자의 의도에 반하는 해석이 되고 따라서, 해당 권리의 절대적 성격이 제한될 수 있다고 동 항소위원회는 판단한 것이다.

특히, 비엔나조약법협약의 인용과 함께, 동 법률항소위원회는 당해 사건에서 공정한 구두심리를 받을 권리의 성격을 판단하는데 있어, 유럽인권재판소의 관련 판례를 인용하였는데 해당 재판소의 경우에도 유럽인권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해석하는데 있어 그 제한을 인정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즉, 상기 언급한 것처럼 동 재판소는 공공에서의 구두심리 또는 공청회의 개최를 분쟁당사자를 사적인 (또는, 비밀리에 행해지는) 사법집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절차법상 “근본적 원칙”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으나, 다수의 판례에서 유럽인권협약 제6조1항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1차 법원에서 심리되었다면 2차 또는 3차법원

117)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article 31(1).

1. A treaty shall be interpreted in good faith in accordance with the ordinary meaning to be given to the terms of the treaty in their context and in the light of its object and purpose.

에서의 추가 구두심리개최는 부적절하거나 또는 요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해 또는, 특정 분쟁당사자가 서면절차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개진할 충분한 기회를 부여받았을 경우이거나 특정 사안이 중요한 사안이 아니었을 경우의 경우 등에는 해당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특히, 동 재판소가 사법체제의 부족한 재정, 적시판결에 대한 수요 등을 인용하였다는 점 및 유럽인권협약은 진화하는 문서(a living instrument)로써 간주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맞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동 항소위원회는 유럽특허협약 역시 (특히, 비엔나조약법협약 제31조(3)항에 따라) 이와 유사하게 현재 상황이 고려되어 해석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상기와 같이 공정한 구두심리를 받을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는 판결에 도달하게 된 것이다.

요컨대, 유럽특허협약 제116조(1)항의 공정한 구두심리를 받을 권리의 절대적 성격을 인정하면서도 그 제한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유럽특허청 법률항소위원회가 단순한 사실적 정황이 아닌 비엔나조약법협약 및 유럽인권재판소의 관련 판례와 같은 법적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은 N.N. v EPO 사건의 주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2. 검토 및 제언: 구두심리를 받을 권리의 침해 여부 및 interim procedure의 도입

본 논문의 서론에서 논의한 것처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국내법 뿐만 아니라 국제법상 다양한 국제협약에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권리는 국제관습법 (또는, 더 나아가 강행규범)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는 (상기 국제협약들과 함께) 여러 국제기구 문서들에 의해 확인되어 왔다. 이와 같은 해당 권리의 국제법상 위치 및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해 그 절대적 성격을 인정하였으나 그 예외가 있을 수 있다고 하면서 “구두심리를 받을 권리”를 다소 제한했던 본 논문의 위에서 언급한 N.N. v EPO 사건과 관련 유럽특허청 항소위원회의 판결들이 (국제협약인) 유럽특허협약 그리고, 더 나아가 국제관습법 및 강행규범의 위반에 해당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특히, 제2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유럽특허협약 제116조에서 shall 이라고 의무적 규정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해당 질문에 대한 논의를 해보고자 하는데 결론적으로 아래와 같은 이유로 본 논문에서는 해당 사건들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또는, 구두심리를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우선, 상기 모든 사건들에서 유럽특허청 법률항소위원회는 원칙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절대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였다. 그러나, 동 항소위원회는 “항소 근거에 구두심리에서 추가적으로 구체화 되어야 할 사실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또는 “기준이 미충족 되었기 때문에 추가절차의 진행이 불가하다”, “항소이유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점 이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다” 및 “공정한 구두심리의 개최가 합당한 목적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이다” 등의 이유로 공정한 구두심리를 받을 권리가 제한된다고 결정하였다. 이러한 이유들은 유럽특허권자의 특허에 대한 권리의 보호를 포함한 유럽특허체제의 유지 및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구두심리를 요청하는 자가 아닌 다른 분쟁당사자의 권리 (즉, 상기 언급한 법적확실성)를 보호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구두심리의 개최를 허용한다면 이는 단순히 유럽특허체제 및 다른 당사자들에 대해 피해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절차적 남용(abuse of process)에 해당하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유럽특허체제 전체의 일반적인 이해와 유럽특허권자의 권리보호라는 두 사안간의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¹¹⁸⁾

다음으로, 본 논문의 서론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주요 구성요소로써 3가지 요소를 언급하였는데 당해 사건의 경우 유럽특허협약이라는 당사국들에 의해 채택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국제협약에 의해 설치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유럽특허청 법률항소위원회라는 권한있는 법원에 의해 어느 한 당사자의 이해에 치우치지 않은 공정한 재판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 설치된 권한있는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원에 의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원칙 또는 권리가 준수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관련 판결 및 절차가 적절히 대중에 공개되었기 때문에 “공개적인 재판에 대한 원칙 또는 권리” 역시 준수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주요 구성권리들이 관련 사건들에서 준수되었기 때문에 구두심리를 제한한 상기 판결들에 대한 공정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또는 구두심리를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주장은 수락되기 힘들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상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데 있어 유럽특허청 법률항소위원회는 비엔나조약법협약의 조약해석에 관한 규정들 즉, 제31조 등을 기반으로 하여 유럽인권재판소의 유럽인권협약의 해석에 관련된 판례와 같은 권위있는 국제재판소의 견해를 인용하여 해당 권리를 제한하였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요컨대, 위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 국제법상 주요 권리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구두심리를 받을 권리를 제한한 유럽특허청 법률항소위원회의 관련 판례에서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이제까지 논의한 것처럼, 비록 상기 유럽특허청 항소위원회의 판결들에서 구두심리를 제한한 점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또는 구두심리를 받을 권리 자체를 침해했다고 간주될 수는 없으나, 본 논문에서는 특허권자의 보다 적절한 주장 개진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소위 “임시절차”의 도입가능성에 대해 간략히 제언을 해 보고자 한다.

즉, 2023년 6월1일에 출범한 유럽연합의 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의 법적근거가 되는 통합특허법원협약(Agreement on a Unified Patent Court) 역시 구두심리 절차(oral hearing)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해당 규정의 경우 상기 논의한 유럽특허협약상 절차들과는 달리 “서면심리 절차(written procedure)” 이후 그리고, “구두심리 절차” 이전에 “임시절차” 또는 “중간절차”(interim procedure)를 두고 있다. 이에 관한 주요 규정인 통합특허법원협약 제52조에 따르면 중간절차는 서면절차 이후에 필요할 경우(if appropriate) 개최되는 것으로,¹¹⁸⁾ 개최될 경우 판사보고관(judge-rapporteur)이 분쟁 당사자들과 함께 해당 절차를 진행하며, 서면절차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시절차는 종료되어야 한다.¹²⁰⁾ 해당 임시절

118) 참고로, 이러한 일반적 이해와 개인권리 보호간의 적절한 균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유럽인권재판소도 다음과 같이 강조한 바 있다. *Brown v Stott* [2003] 1 AC 681, 704 (Lord Bingham), ... recognised the need for a fair balance between *the general interest of the community and the personal rights of the individual, the search for which balance has been described as inherent in the whole of the Convention* ... (emphasis added).

119) Agreement on a Unified Patent Court, article 52.

(1) The proceedings before the Court shall consist of a written, an interim and an oral procedure,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Procedure. All procedures shall be organized in a flexible and balanced manner.

(2) In the interim procedure, after the written procedure and if appropriate, the judge acting as Rapporteur, subject to a mandate of the full panel, shall be responsible for convening an interim hearing. That judge shall in particular explore with the parties the possibility for a settlement, including through mediation, and/or arbitration, by using the facilities of the Centre referred to in Article 35.

(3) The oral procedure shall give parties the opportunity to explain properly their arguments. The Court may, with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dispense with the oral hearing.

120) Rule of Procedures, Rule 101.

차의 주요 목적은 향후 절차인 구두심리 절차에 대한 준비이며¹²¹⁾ 임시절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임시변론(interim conference)”에서 판사보고관은 문제가 되는 주요 사실들을 확인하고 당사자들과 함께 분쟁해결을 모색할 수 있으며, 각종 증거 및 조사 등에 관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¹²²⁾ 마지막으로, 해당 임시변론의 경우 비디오 또는 유선상으로 개최될 수 있으며 분쟁당사자의 요청이 있고 판사보고관의 승인이 있을 경우 법원에서 열릴 수 있고 특히, 임시변론이 종료된 후 판사보고관은 정해진 결정에 대한 명령을 내려야 한다.¹²³⁾

상기 논의에 따르면, 임시절차는 기본적으로 구두심리 절차의 보다 효율적인 진행과 신속한 재판관의 판결을 위한 중간절차이나, 임시절차 특히, 임시변론을 통해 판사보고관은 분쟁해결의 가능성을 포함한 관련 사실 및 증거에 대해 분쟁당사자들과 함께 다시 한번 검토를 진행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특정 결정을 내릴 권한을 향유한다. 따라서, 임시절차 및 임시변론은 분쟁당사자들에게 판사보고관 앞에서 구두로 사실을 확인받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며 판사보고관은 이를 통해 특정 결정에 대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유럽특허체제 특히, 유럽특허협약에서도 관련 이행규정 또는 절차규칙의 제정을 통해 임시절차 및 임시변론을 도입하여, 해당 임시절차의 경우 분쟁당사자의 요청이 있다면 제한없이 자동적으로 개최가 되도록 하고 해당 임시절차 및 임시변론에서 판사보고관에게 주장을 개진할 기회를 준 다음 만약 구두심리 절차로의 진행이 불가능하다 또는 필요없다고 판사보고관이 판단할 경우 재판관들에 의해 진행되는 구두심리 절차를 제한한다면, 유럽특허체제의 효율적인 집행이라는 일반적인 이해와 특허권자의 의견개진 권리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5. 결론

이제까지 본 논문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역사적 개관 및 구성요소에 대해 알아본 뒤, 해당 권리의 실제적 적용 및 해석에 관련하여 대표적인 국제지식재산권협약 중 하나인 유럽

1. During the interim procedure, the judge-rapporteur shall make all necessary preparations for the oral hearing. He may in particular, where appropriate, and subject to the mandate of the panel, hold an interim conference with the parties which may be held on more than one occasion and may exercise the powers provided for in Rule 334.

2. The judge-rapporteur shall have the obligation to ensure a fair, orderly and efficient interim procedure.

3. Without prejudice to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e judge-rapporteur shall complete the interim procedure within three months of the closure of the written procedure.

121) 상기 Rule 101(1)항을 확인할 것.

122) Rule of Procedures, Rule 104.

The interim conference shall enable the judge-rapporteur to: (a) identify main issues and determine which relevant facts are in dispute; ... (d) explore with the parties the possibilities to settle the dispute or to make use of the facilities of the Centre; (e) where appropriate, issue orders regarding production of further pleadings, documents, experts (including court experts), experiments, inspections, further written evidence, the matters to be the subject of oral evidence and the scope of questions to be put to the witnesses; ... (g) make any other decision or order as he deems necessary for the preparation of the oral hearing including, after consultation with the presiding judge, an order for a separate hearing of witnesses and experts before the panel; ...

123) Rule of Procedures, Rule 105.

1. The interim conference should, where practicable, be held by telephone conference or by video conference. ... 2. On request by a party, subject to paragraph 1 and the approval of the judge-rapporteur, the interim conference may be held in Court. ... 5. Following the interim conference, the judge-rapporteur shall issue an order setting out the decisions taken.

특허협약의 관련 규정인 유럽특허협약 제116조의 적용 즉, 구두심리를 받을 권리에 관련된 유럽특허청 법률항소위원회의 주요 판결들에 대해 살펴보고 특히, 이에 대해 상세히 심의를 진행한 N.N v EPO 사건의 내용에 대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토대로, 해당 판결의 주요 특징은 무엇인지에 대해 간략히 논의한 다음 해당 판결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구두심리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비록 해당 권리는 침해되지 않았다고 간주되나 유럽특허체제상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다 적절히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통합특허법원 협약의 임시절차 및 임시변론의 도입에 대해 제언을 진행하였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국제인권법 및 국제형사법에서 중요한 권리로 논의되어 왔으며, 상기 논의한 것처럼 국제지식재산권법에서도 중요한 권리로서 다루어져 왔다. 즉, 해당 분야의 국제법들의 경우 개인(個人)이 국제법상 주체로 자주 등극하기 때문에 이들의 권리보호가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졌던 것이다. 비록 해당 권리의 절대적 성격 및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나, 상기 언급한 것처럼 여러 사실적 및 법적 근거로 해당 권리의 제한 역시 유럽특허체제의 사법동향에서 확인되었다. 특히, 이는 유럽인권법체제에서도 확인되었기 때문에 해당 권리의 절대적 성격과 함께 그 제한은 국제법상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국제지식재산권법과 국제인권법 등 여러 분야의 국제법 분야에서 특정 개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절대적이지 않다는 점이 인정되었다는 사실은 국제법상 개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보호라는 측면에 있어 그 제한이 있다는 사실 명백히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공정한 재판을 권리의 절대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제한을 인정한 입장이 개인이 분쟁의 주체로 자주 등장하는 다른 분야의 국제법 예를 들면, 국제투자법 등에서도 인정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서양)

Amal Clooney & Phillipa Webb, *The Right to a Fair Trial in International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21.

Daniel Moeckli et al.,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22.

United Nations, *Human Rights in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A Manual on Human Rights for Judges, Prosecutors and Lawyers*, United Nations, 2003.

학술지(국내 및 동양)

원유민, “국제인권규약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서울국제법연구」, 제29권 제1호 (2022).

학술지(서양)

Ian Langford, “Fair Trial: The History of an Idea”, *Journal of Human Rights*, Vol.8(2009).

Judge Patrick Robinson, “The Right to a Fair Trial in International Law, with Specific Reference to the Work of the ICTY”, *Berkeley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Publicist*, Vol.3(2009),

판례

Brown v Stott [2003] 1 AC.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Axen v Germany, No 8273/78.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Jussila v Finland, No 73053/01.

European Patent Office, Decision of the Enlarged Board of Appeal of 16 July 2019.

European Patent Office, Decision of the Legal Board of Appeal of 30 July 1987.

European Patent Office, Decision of the Legal Board of Appeal of 8 March 1990 [J 15/89].

European Patent Office, Decision of the Legal Board of Appeal 3.1.01 of 26 July 2023.

European Patent Office, Decision of the Technical Board of Appeal of 26 April 1989.

European Patent Office, Decision of the Technical Board of Appeal 3.3.2. of 26 April 1989.

European Patent Office, Decision of the Technical Board of Appeal 3.2.3 of 10 January 1991.

European Patent Office, Decision of the Technical Board of Appeal 3.2.04 of 5 December 2006.

European Patent Office, Decision of the Technical Board of Appeal 3.4.01 of 22 August 2008.

European Patent Office, Decision of the Technical Board of Appeal 3.5.05 of 22 January 2016.

European Patent Office, Decision of the Technical Board of Appeal 3.5.02 of 23 August 2021.

European Patent Office, Decision of the Legal Board of Appeal of 30 July 1987.

European Patent Office, Decision of the Legal Board of Appeal 3.1.01 of 26 July 2023.

Martinie v. France [GC], no. 58675/00.

인터넷자료

European Patent Office (EPO), “Boards of Appeal”, EPO.org, <<https://www.epo.org/en/case-law/appeals>>, 검색일: 2025. 5. 30.

European Patent Office (EPO), “Article 21 of the European Patent Convention”, EPO.org, <<https://www.epo.org/en/legal/epc/2020/a21.html>>, 검색일: 2025. 5. 30.

European Patent Office (EPO), “About the Boards of Appeal”, EPO.org, <<https://www.epo.org/en/case-law/appeals/organisation>>, 검색일: 2025. 5. 30.

Mewburn Ellis, “Oral Proceedings”, Mewburn Ellis, <<https://www.mewburn.com/law-practice-li>>

brary/oral-proceedings>, 검색일: 2025. 5. 29.

US Congress,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Sixth Amendment", Congress.Gov, <<https://constitution.congress.gov/constitution/amendment-6/>>, 검색일: 2025. 6. 6.

기타자료

Human Rights Committee (HRC), "General Comment No. 32, Article 14, Right to equality before courts and tribunals and to fair trial", CCPR/C/GC/32, United Nations, 2007.